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금 중
보육 및 교육 사업 지원 확대〉

■ 박상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49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상웅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5.
3. 회부연월일 : 2025. 3.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심의 평가한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소규모 단기적인 성과 중심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임. 이로 인하여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주요 사업의 하나인 보육 및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은 보육 및 교육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청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육 및 교육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 후단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기본 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을 수 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 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 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 자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 다. <u><후단 신설></u>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 ----- ----- ----- ----- ----- ----- ----- --. <u>이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서 교부되는 지원금 중 조례로 정 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보육 및 교육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 여야 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후단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도기

현행	개정안
	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2.6.10. 제정)은 인구감소지역의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해 ①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②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의 방식으로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지원을 위해 ① 유치원 및 학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및 교육 경비 보조, ③ 지방대학 학생·졸업생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개정(2021.12.7.)을 통해 도입되었는데,¹⁾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영) ① 시·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운영한다.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 및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다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소규모의 단기적인 성과 중심 사업에 집중하고 인구감소나 지방소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장기적 정책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고,³⁾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건수 532개 중 교육 분야 사업은 16개(3%), 보육 분야 사업은 12개(2.3%)에 불과하며, 사업비 8,974억원 중 교육 분야 사업은 297억원(3.3%), 보육 분야 사업은 199억원(2.2%)으로 2022년에 비하여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등 보육 및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 제18877호(2022. 6. 10.)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3) 류영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과제: 중장기적 정책과 거점 전략화」, NARS 입법·정책 제108호,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대응기금 분야별 사업 현황]

구분		계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노인·의료	보육	교통	복합	기타
사업건수 (개)	'22	508	130 (25.6%)	121 (23.8%)	110 (21.7%)	53 (10.4%)	36 (7.1%)	26 (5.1%)	9 (1.8%)	-	23 (4.5%)
	'23	557	139 (25.0%)	141 (25.3%)	121 (21.7%)	53 (9.5%)	37 (6.6%)	25 (4.5%)	13 (2.3%)	-	28 (5.0%)
	'24	512	114 (22.3%)	112 (21.9%)	71 (13.9%)	34 (6.6%)	11 (2.1%)	23 (4.5%)	7 (1.4%)	104 (20.3%)	36 (7%)
	'25	532	81 (15.2%)	110 (20.7%)	53 (10%)	16 (3%)	19 (3.6%)	12 (2.3%)	9 (1.7%)	190 (35.7%)	42 (7.9%)
사업비 (억원)	'22	7,477	1,869 (25%)	1,525 (20.4%)	1,939 (25.9%)	717 (9.6%)	552 (7.4%)	423 (5.7%)	135 (1.8%)	-	317 (4.2%)
	'23	9,967	2,653 (26.6%)	2,185 (21.9%)	2,565 (25.7%)	932 (9.4%)	617 (6.2%)	456 (4.6%)	269 (2.7%)	-	290 (2.9%)
	'24	8,962	1,697 (18.9%)	1,997 (22.3%)	1,645 (18.3%)	495 (5.5%)	122 (1.4%)	338 (3.8%)	132 (1.5%)	2,179 (24.3%)	357 (4%)
	'25	8,974	1,122 (12.5%)	1,399 (15.6%)	1,106 (12.3%)	297 (3.3%)	283 (3.2%)	199 (2.2%)	182 (2%)	4,164 (46.4%)	222 (2.5%)

※ 자료 :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보육 및 교육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 지역에서 다양한 보육·교육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보육·교육 기반을 확충하고, 출산·육아 의향 또는 자녀가 있는 젊은 인구의 유출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인구감소지역법」은 ‘시·군·구 → 시·도 → 국가’의 상향식 계획 수립체계를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주도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국가의 지원은 다양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이나 주민 수요 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관광기반의 확충을 통한 생활인구 증가 방안이나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 인구 유입 방안, 산업단지 지원을 통한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지원금 중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보육·교육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재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우선순위 판단은 지역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도와 시·군·구를 합쳐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지역주도의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한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부처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상호 간 행정구역을 넘어서 주민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지원의 원칙) 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및 연계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사업 공모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 위기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350